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3월1일 부터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반기신청·지급제도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

※ 2021년 9월에 상반기분 신청을 하셨다면 2022년 3월에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

① 자동응답전화(ARS)

☎ 1544-9944

② 모바일 앱(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③ 홈택스

www.hometax.go.kr

④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신청요건(뒷면 참조)이 충족된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신청하세요

① PC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② 복지이음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

📢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신청요건 및 방법을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동영상



신청방법 동영상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반기신청 안내

○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으며, 둘 중 **하나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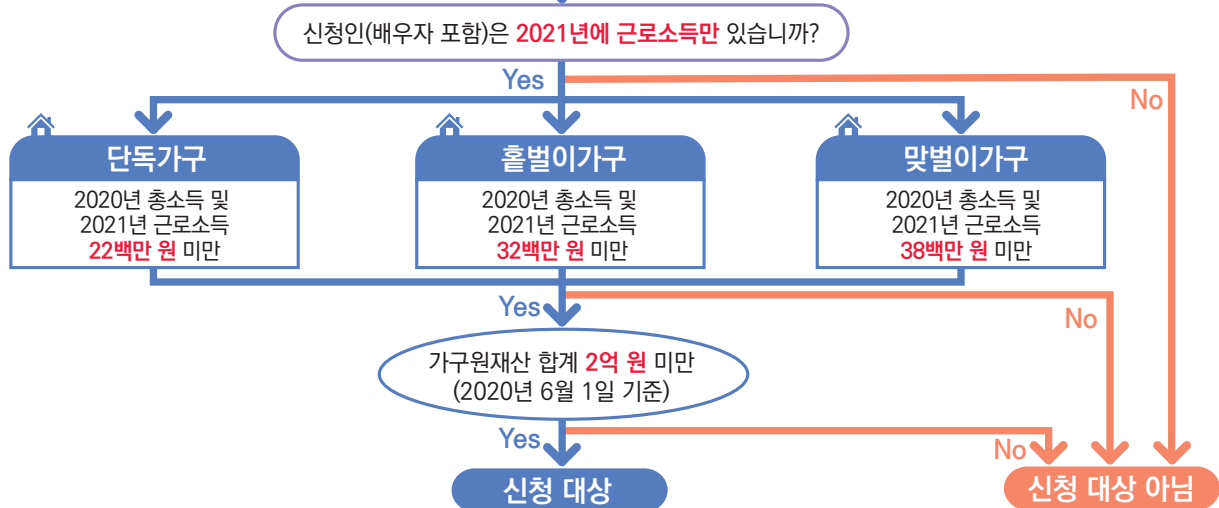
구분	대상자	소득발생	신청시기	지급시기	지급액	
선택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21년 상반기	21.9.1.~15.	21년 12월 말	35%
			21년 하반기	22.3.1.~15.	22년 6월 말	100% - 상반기 지급액
	정기 신청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21년 연간	22.5.1.~31.	22년 9월 말	100%

* 2022년부터는 기존 정산시기(8월 지급)를 앞당겨 6월에 하반기분과 함께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8월에 심사하여 지급합니다.

신청요건

- 아래 가구유형별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검토표



가구	○ 가구 기준일은 2020년 12월 31일 입니다	
	독거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직계존속(중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은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

소득	○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아래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연간 총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독거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준금액	4만 ~ 2,200만 원 미만	4만 ~ 3,200만 원 미만	600만 ~ 3,800만 원 미만	

재산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가 2020.6.1.기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금융재산·유가증권	

공통요건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